

제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신고·신청 안내

주시카고총영사관(문의 : 312 822 9485, 우창호 영사)

2024년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은 기간 내에 빠짐없이 신고 또는 신청을 하시어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 투 표 일 : 2024. 3. 27.(수) ~ 4. 1.(월) [대한민국 선거일 : 2024. 4. 10.(수)]

□ 선거권자 : 18세 이상(2006년 4월 11일에 태어난 사람까지)의 대한민국 국민

① 국외부재자 :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민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

② 재외선거인 :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국민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

【 ① 국외부재자신고 】

□ 신고기간 : 2023년 11월 12일(일)부터 2024년 2월 10일(토)까지

□ 대 상 자 :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음의 이유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

○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전 출국하여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

○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아니할 사람

□ 제 출 처

○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는 사람은 재외공관(재외투표관리관)에 제출

○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은 주소지 관할 구·시·군의 장에게 제출

□ 제출방법

중앙선관위 홈페이지(ova.nec.go.kr), 서면(우편, 공관 방문, 관할구역을 순회하는 공관직원에게), 전자우편(ovchicago@mofa.go.kr)

※ 전자우편의 경우 본인의 전자우편 주소로 자신의 신고서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음.

□ 제출서류 : 국외부재자신고서

【 ② 재외선거인 (변경)등록신청 】

□ 신청기한 : 2024년 2월 10일(토)까지

□ 대 상 자

○ 등록신청

-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 직전 선거(제20대 대통령선거)의 재외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

○ 변경등록신청

- 직전 선거(제20대 대통령선거)의 재외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사람으로
- 해당 명부의 기재사항(성명, 여권번호,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등)에 변경이 있는 사람

□ 제 출 처 : 재외공관(재외투표관리관)

□ 제출방법

○ 중앙선관위 홈페이지(ova.nec.go.kr)

○ 서면(우편, 공관 방문, 관할구역을 순회하는 공관직원에게)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를 대리하여 제출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본인의 배우자와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 한함.

○ 전자우편(ovchicago@mofa.go.kr)

※ 전자우편의 경우 본인의 전자우편 주소로 자신의 신청서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음.

□ 제출서류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 또는 변경등록신청서

※ 재외선거인은 투표소에서 신분증명서와 국적 확인에 필요한 서류의 원본을 제시하여야 투표할 수 있음.(국적확인 서류에 사진이 첨부된 경우 신분증 지참 불요)

첨부 1. 신고·신청 서식 1부.

2. 제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주요 사무일정 1부.

신고·신청서를 작성하시기 전에 뒤쪽에 기재된 유의사항 및 작성요령을 반드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 국 외 부 재 자 신 고 서¹⁾
-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

접 수	접수번호	
	접수일자	
	접 수 자	(서명)

성명 ²⁾	한글	영문 (대문자)												
여권번호		※ 여권번호는 왼쪽부터 적습니다.												
신분예 다른 구분 ³⁾ ※ 현재 주민등록 보유 여부에 따라 해당 칸에 ☑표한 후 기재)	☐ 주민등록이 있는 사람	주민등록 번호	-											
		주소 (주민등록표상)	(시·도)			(구·시·군)			(읍·면)			(대로·로·길)		
	☐ 주민등록이 있었던 사람	말소된 주민등록번호	-											
		대한민국 최종주소지	(시·도)			(구·시·군)			(읍·면)			(대로·로·길)		
	☐ 주민등록이 없었던 사람	생년월일	-			-			성별 (해당 칸에 ☑표)			남 ☐ 여 ☐		
		등록기준지 (본적지)	(시·도)			(구·시·군)			(읍·면·동)			(대로·로·길)		
부모성명 ⁴⁾		아버지 성명				어머니 성명								
연락처 ※ 반드시 점선 안에 기재	전화번호 ⁵⁾ (가정·직장 등)	(국·가·번·호) (지·역·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 번호 ⁵⁾													
	전자우편 ⁶⁾ (E-mail)													
국외거소 ⁷⁾ (국외에서 우편물을 받아 볼 수 있는 장소) ※ 반드시 점선 안에 기재		거류국명												
		주소												
		☐ 공관을 거소로 신고할 사람 (☑표한 후 “주소” 칸에 공관명만 기재) 투표예정공관 ⁸⁾												
외국국적 보유여부 ※ 복수 국적자만 기재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 예 ☐ 아니요												
	국적보유 국가명													
	외국국적 취득사유	☐ 출생 ☐ 혼인 ☐ 입양 ☐ 인지 ☐ 기타()												
본인은 「국적법」에 따른 대한민국 국민임을 확인하고 「공직선거법」(제218조의4)·(제218조의5)에 따라 (국외부재자신고)· (재외선거인 등록신청)를(을) 하며, 선거권 등을 확인하기 위한 가족관계등록정보, 주민등록정보, 수형정보, 여권정보 등의 개인신상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신청인) ⁹⁾ : (서명 또는 날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귀중 ○ ○ 구·시·군의 장 귀하														

※ 국외부재자신고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은 재외공관에 신고·신청서를 제출(방문, 우편 또는 전자우편)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https://ova.nec.go.kr>)를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 유 의 사 항

1. 이 신고·신청서는 기계로 판독되므로 접거나 찢는 등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이 신고·신청서의 기재사항에 오류가 있는 경우 신고·신청인에게 불이익(재외선거인명부등 미등재, 선거정보 수신불가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모든 사항은 정자로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3. 거짓으로 신고·신청을 한 사람 또는 자신의 뜻에 따라 신고·신청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사람은 투표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공직선거법」 제247조에 따라 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받을 수 있습니다.

※ 작 성 요 령

1. “현재 주민등록이 있는 사람”은 국외부재자신고서에 ☒ 표시를 하고, “주민등록이 있었던 사람이나 주민등록이 없었던 사람”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에 ☒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2. “성명”칸에는 여권에 적혀있는 성명(영문 포함)을 그대로 적어야 합니다.
☞ 다만, 여권의 성명과 가족관계등록부(호적)상의 성명이 다른 때에는 가족관계등록부(호적)상의 성명을 적습니다.
3. “신분에 따른 구분”칸에는 현재 주민등록이 있는 사람은 해당 칸에 ☒ 표시 후 “주민등록번호와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적고, 주민등록이 있었던 사람은 해당 칸에 ☒ 표시 후 “말소된 주민등록번호와 대한민국 최종주소지”를 적어야 하며, 주민등록이 없었던 사람은 해당 칸에 ☒ 표시 후 “생년월일과 가족관계등록부(호적)상의 등록기준지(본적지)”를 적고 “성별”의 해당 칸에 ☒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4. “부모 성명”칸에는 주민등록이 없었던 사람에 한해 국적·본인여부 및 등록기준지(본적지)의 정확한 확인을 위하여 가족관계등록부(호적)상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성명”을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5. “전화번호”와 “휴대전화번호”칸에는 거류국에서 연락이 가능하도록 가정·사무실 등의 전화번호(국가번호-지역번호-전화번호)와 휴대전화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 전화번호와 휴대전화번호는 국외부재자·재외선거인 요건확인, 우편물 수취여부 확인, 투표기간·장소 등 안내, 그 밖에 각종 선거정보 제공에 활용되므로 외국의 전화번호가 없는 경우 연락 가능한 대한민국 내 전화번호를 적을 수 있습니다.
6. “전자우편(E-mail)”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발송하는 정당·후보자 정보자료 송부, 재외선거인명부등 등재여부 통지, 이의신청 결과 안내, 투표기간·장소·지참물 등 각종 선거관련 정보·자료 등의 제공에 활용되므로 이러한 자료 등을 제공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7. “국외거소”칸은 거류국에서 우편물을 받아 볼 수 있는 장소를 로마자 또는 영문 대문자(현지어를 추가로 적을 수 있음)로 반드시 점선 안에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 다만, 직장·생업·이사·주소불확정·거류국의 우편제도 미비 등의 사유로 국외에서 우편물을 받아보기 어려운 사람은 공관을 거소로 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 표시 후 “주소”칸에 공관명만을 적습니다.
8. “투표예정공관”칸은 재외투표기간 중 실제 투표하고자 하는 공관의 명칭을 적습니다.
9. 끝부분의 “(신고인)·(신청인)”에는 반드시 본인이 성명을 적고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별첨 2】

제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주요 사무일정

시행일정	요일	실시사항	기준일	관계법조
‘23. 10. 13. ~ ‘24. 5. 10.	금 금	재외선관위 설치·운영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후 30일까지	법§218① 규§136의2
‘23. 11. 12. ~ ‘24. 2. 10.	일 토	국외부재자 신고	선거일전 150일부터 60일까지	법§218의4,5,6 규§136의4,5
~ ‘24. 2. 10.	토	재외선거인 (변경)등록신청	선거일전 60일까지	
		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 등 작성		
		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등 송부	공관명부 등 작성 즉시	법§218의7 규§136의6
‘24. 2. 21. ~ 3. 1.	수 금	재외선거인명부 등 작성	선거일전 49일부터 40일까지	법§218의8,9 규§136의8,9
‘24. 3. 2. ~ 3. 6.	토 수	재외선거인명부 등 열람 및 이의신청 (불복신청은 이의신청 결정 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날까지)	선거일전 39일부터 35일까지	법§218의10,11
‘24. 3. 7. ~ 3. 10.	목 일	재외선거인명부등 누락자 등재신청	선거일전 34일부터 31일까지 (이의신청기간만료일의 다음날부터 재외선거인명부등의 확정일 전일까지)	법§218의11③ 규§136의10②
‘24. 3. 11.	월	재외선거인명부등 확정	선거일전 30일	법§218의13①
‘24. 3. 19. ~ 3. 23.	화 토	선거인명부 작성	선거일전 22일부터 5일 이내	법§37, 규§10
		거소선상투표신고 및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 작성		법§38, 규§11
‘24. 3. 21. ~ 3. 22.	목 금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9시~오후6시)	선거일전 20일부터 2일간	법§49, 규§20
		정당·후보자 정보자료 제출		법§218의14④ 규§136의13
~ ‘24. 3. 21.	목	재외투표소의 명창소재지와 운영기간 등 공고	선거일전 20일까지	법§218의17③
~ ‘24. 3. 24.	일	재외투표소의 투표참관인 신고	선거일전 17일까지	법§218의20②
~ ‘24. 3. 25.	월	재외투표용지 원고 송부	재외투표기간개시일전 2일까지	법§218의18② 규§136의17
‘24. 3. 27. ~ 4. 1.	수 월	재외투표소의 설치·운영	선거일전 14일부터 9일까지 기간 중 6일 이내	법§218의17 규§136의15
		재외투표 (매일 오전8시~오후5시)		
		재외투표 등 회송	재외투표기간만료일후 지체없이	법§218의21② 규§136의23
‘24. 4. 5. ~ 4. 6.	금 토	사전투표 (매일 오전6시~오후6시)	선거일전 5일부터 2일간	법§155②, §158
‘24. 4. 10.	수	투 표 (오전6시~오후6시)	선 거 일	제10장(투표)
		개 표 (투표종료후 즉시)		제11장(개표)
		공관 개표(사유발생 시)	중앙위원회가 정한 일시	법§218의24 규§136의25